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년 3월 5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2024년 2월 21일
- 나. 제안자: 김순옥 의원 외 8명
- 다. 회부일자: 2024년 2월 23일
- 라. 상정일자: 제302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상정·의결(2024. 3. 5.)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김순옥 의원)

□ 제안이유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당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 (안 제1조 ~ 제2조)
- 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관련 구청장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안 제4조 ~ 제5조)
- 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대상 지원사업 명시 (안 제6조)
- 마. 효율적 사업 시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등 (안 제7조 ~ 제8조)
- 바. 중복지원의 제한사항 규정 (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민법」 제779조

나. 해당부서: 복지정책과

다. 기 타: 입법예고(2024. 2. 23. ~ 3. 4.)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제정취지

-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에서는 강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명시함
-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 **안 제3조**에서는 관내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 등을 강구하고,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
- **안 제4조 ~ 제5조**에서는 구청장은 종합적인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해당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등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또한 5년마다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근로, 교육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음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안 제7조 ~ 제8조에서는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지원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을 구할 수 있고, 사업의 진행 과정에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등 민간전문가 활용에 대하여 서술하였음
- 안 제9조에서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 서비스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경우, 본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중복 지원을 방지하였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2021년 대구에서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여 의도적으로 아버지를 방치, 숨지게 한 대구간병 사건¹⁾을 계기로, 가족의 돌봄과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발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가족돌봄을 부담하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의 경우 자신의 학업과 진로에 투자할 시간과 기회를 놓쳐 생애 전반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신체적·정신적 문제로도 연결되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해당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서비스의 경우 개별 법령 및 정책 등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는 상황임

1) "22살 청년 간병살인...정치권도 영케어러 정책 마련 촉구"(2021. 11. 7. 경향신문)

-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각 법안 및 타 조례 등에서 장애, 정신 및 신체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청소년·청년으로 지칭²⁾하고 있으며, 이들의 실태 등 현황 파악을 위한 정확한 통계 산출에는 어려움이 있음
- 다만,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 등에서 가족돌봄청년 현황 파악을 위하여 표준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지법과 심층면접 등의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해당 조사를 기반으로 예상한 우리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예상 추이는 다음과 같을 것으로 보임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구수 예상 추이】 (2023년 9월말)

구 분	연 령	인구수	강서구 예상추이	
			보건복지부 기준 (*)	서울특별시 기준 (**)
청소년 (청소년기본법 기준)	9세 - 24세	75,929명	3,113명	1,063명
청년 (청년기본법 기준)	19세 - 34세	138,657명	5,684명	1,941명
합 계	9세 - 34세	180,121명	7,385명	2,522명

(*)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추정 추이: 4.1% 단순대입
 (**)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추정 추이: 1.4% 단순대입

2) 가족돌봄청년 지칭 사례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
-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 법안」 (더불어민주당 서영석의원): 고령 또는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며 자신의 학업, 취업, 근로활동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3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청년

-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공감대 부족과 개인 사정 노출을 꺼리는 문화로 인해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가족돌봄 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여짐
- 또한, 개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단편적으로 산재하여 있던 사업내용 등을 하나의 조례로 정비하여 해당 대상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부서에서 사업 추진 시 다른 분야의 청소년·청년 지원 계획 등과 중복·상충될 소지가 있는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